업라이즈투자자문「투자자문계약서」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1조~16조 (생략)	**제1조~16조** (현행과 같음)	
제17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생략)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고객의 계약 위반내용의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객의 자문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설정되어 투자자문재산의 서비스에 제한이 있는 경우 2. ~6. (생략)	**제7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고객의 계약 위반내용의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 2. ~6. (현행과 같음)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요청사항 반영
제17조~제22조 (생략)	**제17조~제22조** (현행과 같음)	
제23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 · 무선 · 화상통신 · 컴퓨터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고객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요청사항 반영
<별지> 세부계약조건	**<별지> 세부계약조건**	

1.~9. (생략) **10.** 제17조제2항의 "<별지>에서 정하는" 연체이자 : 9.9% **11.** (생략)	**1.~9.** (현행과 같음) **10.** 제18조2항의 "<별지>에서 정하는" 연체이자 : 연9.9% **11.** (현행과 같음)	금융투자협회 개선사항 반영
부칙 (신설)	**부칙** 이 약관은 202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